

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



Best-HRD에 도전하세요!

공공 및 민관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하고자
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(Best-HRD)사업을
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
접수기간

3. 24.(월) ~ 5. 22.(목)

신청대상
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(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외)

구분	대상기관	공통사항
대기업 부문	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	고용보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제외 (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) ▶재인증 대상 : 유효기간 내 재인증 신청한 기인증 기업 ('22~'24년)
중소기업 부문	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	
선취업-후학습 기업 부문	▶선취업·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- (선취업) 업계고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), 인문계고 특화과정,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- (후학습) 재직자특별과정, 사내대학, 일학습병행 P-Tech, 야간·계약학과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학점취득(학위취득), 국가자격증 취득 등	

선정절차

서류제출	서류심사	현장심사	인증위원회 심의	인증수여
3.24. ~ 5.22.	6월	6 ~ 7월	8월	9월

인증혜택

부처별	주요내용	비고
고용노동부	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*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	공통
	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대표자 가점(3점)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	
	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* 고용안정장려금(5점), 무급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(최대 10점)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시 가점(최대 1점)	중소기업
	조달청	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* 물품구매/일반용역 적격심사,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(각 1점) *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심사 신인도 평가(0.5점)
중소벤처기업부	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 (보증료 0.2%p 감면, 심사 완화)	중소기업
문화체육관광부	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(최대 5점)	공통
기타	인증기관 사례 홍보	공통
	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	

* 인증기관에 제공되는 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.

인증수여

고용노동부(총괄),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유효기간 3년('25~'28)의 인증서 수여

인증결격기준

▶ 최근 3년(공고일 기준) 이내

-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*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국세기본법, 관세법,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,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,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)
- 중대산업재해(중대재해처벌법) 또는 중대재해(산업안전보건법)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(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)

▶ HRD 또는 노동관계법의 범위

- 근로기준법
- 최저임금법
- 남녀고용평등법
- 임금채권보장법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-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-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- 근로복지기본법
-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
-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
-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산업안전보건법
-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고용보험법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- 중대재해처벌법

문의 및 접수

문의 |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1644-8000
또는 지부·지사

접수 | HRD4U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
제출서류 양식 및
사업 세부사항 안내 사이트 |

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
HRD4U(www.hrd4u.or.kr/hrdcert)



HRD4U인증페이지